

분 할 공 고

1.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는 2016년 12월 8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재산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쌍용에너지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는 존속하기로 하며, 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중 분할계획서에 따라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당사는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않는 나머지 사업의 재산에 관한 채무에 대해서만 변제할 책임을 지기로 하였습니다.
2. 위 결의에 의하여 상법 소정의 분할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30조의 11 및 동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이 공고로써 분할완료사실을 각 주주들께 보고합니다.

2017년 1월 10일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34(저동2가)
대표집행임원 사장 황 동 철